

의안번호	2215617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6.1.21.
추계번호	25B7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800만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안 제16조의2제1항))	98	-	-	-	-	98	20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주발사체 발사 후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정부는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6조 의2(우주발 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	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제2항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 후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할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구축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우주발사체의 발사 횟수 및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제3항	×	·제3호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¹⁾의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우주발사체”란 인공위성, 탐사선, 우주선 등 우주 물체를 지구 대기권 밖 또는 궤도에 투입하기 위하여 설계된 비행체를 말한다.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사 연구용역 실시사례를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9,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유사사례 관련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내용
배출허용기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재)에프아이티 아이시협연구원	2024. 8.~ 2025.1.	98	·배출시설 관리 수단별 배출시설 운영 효율성 분석 ·신규 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현황 조사 ·오염물질 배출강도, 환경 현안 등을 고려한 배출 허용기준 우선 적용 시설 선정 ·지속적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를 위한 방법론 마련 ·배출허용기준 관리체계 개선 등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추계 첫 해인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만 총 9,8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안 제16조의2제1항)	98	-	-	-	-	98	20

주: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5.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이란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화학 잔류물 및 우주 잔해물 등을 말한다.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배출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 여부, 용역 내용 및 용역비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